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2호

발행일: 2025. 3. 14. (금)

제422회 국회(임시회, 2025. 2. 3. ~ 2025. 3.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 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 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V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2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27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모두 9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2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일명 에너지3법), (2) 반도체 설비투자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K칩스법), (3) ATS의 원활한 출범을 통한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투자자에게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2회 국회의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3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 · 정춘생 의원 · 윤종오 의원 외 188인
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정무위원회(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등 12인
10	기획재정위원회(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기획재정위원장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의원 등 10인
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2인
1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0인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 등 11인
19	교육위원회(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등 12인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등 14인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0인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 등 12인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6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2인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4인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30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 의원 등 13인
31	국방위원회(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3인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3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9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
4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등 10인
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0인
4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0인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4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4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2인
5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의원 등 12인
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5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
5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 의원 등 18인
5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등 15인
58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0인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0인
6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0인
61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2	보건복지위원회(1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2인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7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0인
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0인
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등 21인
7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7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3인	
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1인	
77	환경노동위원회(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4	환경노동위원회(1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등 13인
8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등 10인
8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 등 10인
9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9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9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9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V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격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리, 한빛, 한울, 월성, 새울, 신월성 등 6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2015년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2021년 3월)을 발표한 바 있고,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 조직’을 정부 내에 신설하고, 부지선정, 지역지원, 주민 소통 등 주요 과제 세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성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등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홍익표 의원이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5-02-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1.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과제목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주요 내용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7. 12.)

㉠ 원전역할 강화 및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

- (원전 활용)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믹스 재설계
 - 신한울 3·4는 환경 즉시 개시 등을 통해 '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
 - 특별법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실행
 -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합리적 조정
- (전력 공급)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하계 공급 관리
 - 원전비중 확대 등을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연내)
- (에너지안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으로 선제적·종합적 안보체계 구축
 - * 핵심자원 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및 컨트롤타워 구축 등
 - 민간 주도 해외자원 확보,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강화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계속운전 조속 추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30년 총 10기) 절차 신속 진행
* 고리 #2·3·4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빛 #1·2 및 한울 #1·2 안전성평가 신청(23.7)
-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 및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 착수
- 대국민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한 원전소통 지원센터 신설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4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4. 1. 31)

◇ 무탄소 에너지원 원전·재생·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 및 산업 생태계 확충

□ 원전일감 3.3조원 공급, 원전수주 조기달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완성

-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을 수령**토록 하여 원전기업 현장에서의 온기 확산
* 원전일감 공급 (발주 기준) : (‘22) 2.4조원 → (‘23) 3.0조원 → **(‘24) 3.3조원**
** (기준) 계약 2~3년 후 납품시 대금지급 → (개선) 계약직후 총계약금 30%이내 선금지급 - 선금 보증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중소 기자재업체 부담 완화
- 원전 특별금융을 2배로 확대*하여 원전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조특법 세제혜택 대상 확대**를 통해 원전 신기술 투자 촉진,
* 원전 특별금융 : (‘23) 0.5조원 → **(‘24) 1조원**
** 원전 분야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전기술에 추가확대 반영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전 전주기 제도적 기반 완성
- 원전설비 5조원 수주 조기 달성 및 ‘27년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 체코·폴란드 등 입찰에 집중하여 대형원전 수출 가시화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2025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4.)

□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원전 건설·수출 등 일감 지속 확대(‘24. 3.3조원 → ‘25. 3.5조원),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25. 2),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재생 정부주도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태양광 국내 공급기반 강화방안’ 수립(‘25. 1)

수소 ‘청정수소발전 입찰(‘25. 1)’을 통한 청정수소 수요 창출 지속, 체계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

출처: 2025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참고 자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추진체계 등 규정](#) 2024. 11.

[김석기 의원안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추진체계 등 규정](#) 2024. 8.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핵발전소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참고자료\)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8. 9.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간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속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시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론화 과정·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 7. 7.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연료비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원전의 건설·운영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다.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그리고 향후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전의 운영을 통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두 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개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도권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전력 수급 등을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확대,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위와 같은 배경

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성원, 양이원영, 이인선, 김희재, 송갑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관련하여 법무법인 지평 Legal Update [\[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자료 참고).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p> <p>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p>	2025-02-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 내용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 등 수소산업 육성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2024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4. 1. 31.)

⑧ 무탄소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

◇ 걸서있고 조화로운 무탄소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 중장기 무탄소에너지 전력공급 계획 마련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4.1.)을 통해 에너지공급 안정성, 탄소중립, 효율성, 수용가능성이 조화된 전원믹스 구현

□ 원전(원전, 재생e) 시장제도 신설로 무탄소전원 확충 뒷받침

- 원전 차액계약 도입으로 低원가 기저전원인 원전 활용도 강화
* 계약기간 중 발전량 고정가격 보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 재생e 가격입찰제도 적용으로 재생e의 안정적 확산 기반 구축
* 제주지역부터 우선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

□ 유연성 자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강건한 전력시스템 구축

- 양수발전, ESS 등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지속적 건설 기반 조성
* (예시) 보조서비스 특성 반영 용량요금계약시장 등 제도 확대
- 플러시DR* 단계적 확대(호남 등) 등 수요측면 유연성자원 활성화
* 전력공급 과잉시 사전약정된 참여자가 전력사용을 중단(현재 제주지역 운영 중)

□ 기간망 확충과 전력수요-공급 분산으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 전력망 건설기간 대폭 단축 추진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 전력수요-공급 분산으로 전력망 건설 부담 완화

출처: 2024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2025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4.)

- 에너지 핵심현안 중점 대응
 - 국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기본 조속 확정
 - *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既 완료 → 국회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예정
 -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
 - 민관 윈윈으로 체코 원전 2기* 본계약(25.3) 체결을 완수하고, 추가 2기 확보(태블린 3·4호기)도 적기 추진
 - * '24.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두코바니 5·6호기 1,000MW x 2기, 약 24조원 규모)
 -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의 차질없는 추진
 - 조광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 반영하여 시추 이후 투자유치 본격 추진
 - * △수익성 비례한 조광료를 산정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등
 - 전국 수소충전소(198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1.24),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5.1.)

출처: 2025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참고 자료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안 등: 국가기간 시설인 전력망 신속 구축 지원체계 마련 등](#) 2024. 11.

[김한규 의원안: 국가기간 시설인 전력망 신속 구축 지원체계 마련](#) 2024. 9.

[이인선 의원안 등: 국가기간 시설인 전력망 신속 구축 지원체계 마련](#) 2024. 8.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국회 긴급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참고자료\)「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전력계통 혁신대책\(23. 12.\)](#)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1. 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 전원구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2038년 목표수요 129.3GW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참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 특별

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5. 21.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6배 전력(power)을 소비하기에 대규모 전력 설비를 확충해야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이 가능하다. AI 혁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전력공급과 적절한 전원구성 검토, 전력공급 비용과 통신망 비용의 종합적 고려,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지하(공동구)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V

개요

미국, 유럽연합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반도체 산업 지원 입법은 개별 법안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비롯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안과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각각의 확대안을 제안하였으나 세액공제율의 결정은 주로 정부의 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만을 8%로 상향하였고, 이후 2022년 12월 30일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 19일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기획재정부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정부의 개정안을 종합하였지만, 세액공제율은 정부안을 따랐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제2023-3호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II](#) 등 참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한번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 포인트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p>	2025-02-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과제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 내용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4]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단일화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 [현행] (대) 6~10 (중견) 8~12 (중소) 16~20 [변경] (대·중견) 8~12 (중소) 16~20
 -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계지원 확대
 -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
 - 현재 2조원+a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 규모 및 운용기간(~'23년 → ~'25년) 추가 확대 추진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원범위에 추가
- (통합고용세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확대
 - *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 통합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1] 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세제)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23년 투자분 한정)
 - * 공제율(%)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 [개선] 일괄 10%
 - * 투자증가분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평균 투자액) × 공제율
 -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23~)
 - * (예시)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압축기,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4]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1]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4 →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

일반분야 R&D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당기분	최대 2	8 ~ 15	25
증가분	25 → 35	40 → 50	50 → 60

* 기업이 당기분/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

출처: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역동경제 로드맵(기획재정부, 2024. 7. 3.)

- (기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 (AI-반도체)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24.下)하고, 18.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24.下)*
 - *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특허 지속, 53원 규모 재평가(25~27), 반도체 패키징(수출인센티브 등) 인프라 신속 조성, AI칩(인프라) 확충 등
 - (바이오)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24.下)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24.下),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 등 제도기반 마련
 - (양자)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상용화, 중장기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 위한 컨텟(양자) 플랫폼 구축(25~)
 - * '25년 국가R&D 예산(0.17조) 전년 대비 32.1% 증가(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①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① (정책금융) 역대 최대 55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24년 52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주요내역]

공급 주체	중점 지원분야·대상	규모(조원)
▶ 산업은행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	24.8
▶ 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	24.0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	4.0

-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 신규 조성(해양진흥공사)

② (세제지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상향은 항구화하고, '25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 [일반] <중소>10→12% <중견>5→7% / [신성장] <중소>12→14% <중견>6→8%

- '25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이 '25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내용연수 단축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 예)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등 지능형 선박 기술 등 검토

- 첨단 R&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

* R&D시설 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

** [대상]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등 추가

[공제율] 국가전략기술·일반 R&D 동시 수행 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공제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안: 반도체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2024. 11.

[허성무 의원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024. 11.

[박성훈 의원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4. 11.

[안도걸 의원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추가 등](#) 2024. 11.

[천하람 의원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추가 등](#) 2024. 11.

[K-반도체 대전환 :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 변곡점](#)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누리집 보도자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30.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 자산(security assets) 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반드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주요 이슈의 이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0. 17.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 패권 경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인 리스크(美· 중간 경쟁, 글로벌 수요 위축 등) 극복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다. 총 두 편 중 첫 번째 편인 본 글에서는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 급변의 의미를 우선 살펴본다.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4. 9.

본 심층평가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 운영방안을 제시

(타당성 분석) 제도의 정책목표, 수혜대상, 지원방식의 적절성, 기타 유사 제도와와의 중복적 성격 여부 등을 분석 (효과성 및 고용영향평가 분석) 동 제도가 연구개발행위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한 후 이러한 양적 확대가 기업의 시장성과 및 기타 기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제도 개선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저해 원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1-11 2022. 12. 30.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 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구개발의 성과는 일부 특허로 출원되기도 하지만,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